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보험 정책 동향

-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「상법」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(12.12.) -

1. 개 요

- **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**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「**상법 시행령**」 **개정안이 12. 12. 국무회의를 통과**

2. 주요 내용

[1] 금리변동 위험 회피목적 거래시(채무증권 혹은 파생상품)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

- 보험회사는 장기 보험부채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라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증가(순자산 감소)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평가액도 증가(순자산 증가)하여 증감액이 상쇄되는 방식으로, **자산부채종합관리(ALM)를 하여 보험부채의 변동성 위험을 회피**하고 있음

  * 보험회사의 위험관리, 자산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상 각종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신(新)지급여력제도(K-ICS) 지급여력비율을 100%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음

- 개정안은 **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입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**

  ► **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 신설**

[2] 보험계약 관련 위험 이전 목적 재보험거래시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

- 보험회사는 **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부를 계약을 통해 재보험회사에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**하게 되는데, 이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를 하는 것과 동일

- 개정안은 **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위험을 이전하기 위하여 재보험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**

  ► **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 신설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[3] 보험금이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시 미실현손익 상계 허용

- 보험회사는 **변액보험,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별계정을 통해 평가손익을 처리**함으로써, 고객에 대한 보험부채의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음
- 개정안은 **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각각의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**

> ► **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다목 신설**

[4] 신설 조문

구 상법 시행령	개정안
제19조(미실현이익의 범위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<신 설>	**제19조(미실현이익의 범위)** ① (구 상법 시행령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· 2. (구 상법 시행령과 같음) 3.「보험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거래를 하고, 그 거래와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.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나.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「상법」제661조에 따른 재보험의 거래 다.「보험업법」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래

(원문 링크)
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1228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